

# **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에서의증인등비용지급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**

발의년월일 : 2007. 11. 26

발 의 자 : 강성국 위원회 6

## **1. 제안이유**

「지방자치법 시행령」(대통령령 제20306호 2007.10.4)의 전부개정에 따라 해당조례에서 인용하고 있는 관련법령 조문을 개정된 법규정에 맞추어 정비하고, 의회에서의 증인 등에 대한 국내여비 지급기준을 현행법령에 맞도록 일부 불합리한 점을 개정코자 하는 것임.

## **2. 주요내용**

- 가. 「지방자치법 시행령」이 전부개정 됨에 따라 해당규정의 근거 법규로 인용하고 있는 조항을 개정된 법규정에 맞게 조정함(안 제1조).
- 나. 의회에서의 증인 등에 대한 국내여비 지급기준을 현행법령에 맞추어 「공무원여비규정」으로 적용토록 함(안 제4조).

## **3. 참고사항**

- 가. 관련법규
  - 「지방자치법시행령」 제44조 제3항
  - 「공무원여비규정」
- 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없음
- 다. 입법예고 : 생략
- 라. 협의사항 : 해당없음

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조례 제 호

**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에서의증인등비용지급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**

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에서의증인등비용지급에관한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명 “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에서의증인등비용지급에관한조례”를 “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에서의 증인 등 비용지급에 관한 조례”로 한다.

제1조 중 “지방자치법 시행령(이하 “영”이라 한다) 제17조의5 제3항”을 “「지방자치법 시행령」(이하 “영”이라 한다) 제44조 제3항”으로 한다.

제3조 중 “다음 각호의 1”을 “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”로 한다.

제4조 중 “국내여비규정 별표2의 제3호”를 “「공무원여비규정」 별표2 중 제2호”로 한다.

제5조 중 “숙박료”를 “숙박비”로 한다.

부 칙

(시행일)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 다만, 제4조의 개정규정은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되, 2007년 12월 31일 까지는 현행 「공무원여비규정」 별표2중 제3호의 규정을 준용하여 적용한다.

## 신 · 구조문 대비표

제정	제정일자
제명 “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에서의 증인등비용지급에 관한조례”	제명 “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에서의 증인 등 비용지급에 관한 조례”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<u>지방자치법</u> 시행령(이하 “영”이라 한다) 제17조의5	제1조(목적)-----「지방자치법」 시행령」(이하 “영”이라 한다) 제44조
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(이하 “의회”라 한다)에서의 증인 및 감정인 또는 참고인(이하 “증인등”이라 한다)에게 지급할 비용의 지급기준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	제3항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. -----.
제3조(비용지급의 예외)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비용을 지급하지 아니한다.	제3조(비용지급의 예외)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----- -----.
1.2.(생략)	1.2.(현행과 같음)
제4조(비용의 지급기준) 증인등에 대한 비용지급에 관하여는 <u>국내여비규정</u> 별표2의 제3호를 준용한다.	제4조(비용의 지급기준) ----- ----- 「공무원여비규정」 별표2중 제2호를 준용한다.
제5조(비용지급일수의 계산) 증인등에 지급하는 현지교통비, <u>숙박료</u> 및 식비는 증인등이 의회 또는 지정된 장소에 출석한 날로부터 증인등으로서 체제한 일수에 의하여 이를 산정한다.	제5조(비용지급일수의 계산) ----- ----- <u>숙박비</u> ----- ----- ----- -----..

# 공무원여비규정

[일부개정 2007.11.13 대통령령 제20381호]

[별표 2] <개정 2007.11.13> - 시행일 2008. 1. 1 -

## 국내여비지급표(제10조부터 제13조까지 및 제16조제1항 관련)

(단위 : 원)

구 분	철도운임	선박운임	항공운임	자동차운임	일 비 (1일당)	숙박비 (1야당)	식 비 (1일당)
제1호	실비 (특실)	실비 (1등급)	실비	실비	20,000	실비	25,000
제2호	실비 (일반실)	실비 (2등급)	실비	실비	20,000	실비 (상한액 : 40,000)	20,000

- 비고 : 1. 항공운임이 2개 이상의 등급으로 구분되어 있는 경우에는 별표 3  
비고에 따라 기획예산처장관과 중앙인사위원회가 협의하여 정하는  
기준에 따른다.
2. 자동차운임은 건설교통부장관 또는 특별시장·광역시장·도지사 또는  
특별자치도지사가 정하는 기준 및 요율의 범위 안에서 정하여진 버스  
요금을 기준으로 한다.
3. 운임 및 숙박비의 할인이 가능한 경우에는 할인요금으로 지급한다.

[별표 2] <개정 2006.1.12> - 현 행 -

국내여비정액표(제10조 내지 제13조 및 제16조제1항관련)

(단위 : 원)

구 분	철도운임	선박운임	항공운임	자동차운임	일 비 (1일당)	숙박비 (1야당)	식 비 (1일당)
특 호	1등급	1등정액	정 액	정 액	20,000	실비	25,000
제1호	1등급	2등정액	정 액	정 액	20,000	46,000	25,000
제2호	1등급	2등정액	정 액	정 액	20,000	46,000	25,000
제3호	2등급	2등정액	정 액	정 액	20,000	30,000	20,000
제4호	2등급	2등정액	정 액	정 액	20,000	30,000	20,000

비고

1. 자동차운임의 정액은 건설교통부장관 또는 특별시장·광역시장·도지사가 정하는 기준 및 요율의 범위 안에서 정하여진 버스요금을 기준으로 한다.
2. 철도운임란 중 1등급은 특실 정액, 2등급은 일반실 정액을 말하며, 당해 철도운임란의 등급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노선의 열차 최고등급에 해당하는 철도운임을 지급한다.
3. 수로여행시 폐리호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특호 및 제1호 해당자에 대하여는 특등, 그 밖의 자에 대하여는 1등운임을 지급하되, 운임의 정액은 해양수산부장관의 인가요금을 기준으로 한다.
4. 운임은 정액으로 지급하되, 할인이 가능한 경우에는 할인요금으로 지급한다.
5. 숙박비란의 실비는 「여신전문금융법」 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지급한 금액으로 한다.